
전남대학교 교수회 · 교수평의회

학칙 및 제 규정

2021. 8. 27.

목 차

I. 전남대학교 학칙(부분발췌)	1
II. 전남대학교 교수회 규정	3
III. 전남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9
IV. 전남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15

I. 전남대학교 학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전남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학조직·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이 대학교는 진리·창조·봉사의 정신으로 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학교조직

제3조(총장·부총장) ① 총장은 학교업무를 통할하고 이 대학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광주캠퍼스 부총장, 여수캠퍼스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조정처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전남대학교 교수회) ①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전남대학교 교수회를 둔다.

② 전남대학교 교수회는 대의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③ 전남대학교 교수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남대학교 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대학평의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는 자문한다.

1.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전남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4조의2(교수평의회) ① 이 대학교의 선진적 발전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교수평의회를 둔다.

② 교수평의회는 주요 보직교수와 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학운영의 현황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교수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대학원·학과(부) 및 부속시설의 설치·폐지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
4. 총·학(원)장의 선출 방법
5. 대학의 시설 및 환경
6. 교권과 후생복지
7. 주요 보직자(부총장, 대학원장, 처장)에 대한 임명동의
8. 총장, 교수평의회 의장, 재적 교수평의회 의원의 1/3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 교수평의회 의결은 재적 교수평의회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수평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교수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전남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II. 전남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학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전남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교수회는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조직) 교수회에는 대의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제2장 교수회

제4조(임원 및 임원의 자격)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회장단으로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수석부회장1명, 부회장 2명) (개정 2016. 5. 27.)
3. 사무처장 1명
4. 상임이사 3명

② 교수회 회장은 이 대학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학무회의의 구성원과 전남대학교 학칙 제8조에 규정된 부속시설의 장은 회장이 될 수 없다.

제5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한다.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을 통해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7. 1.26.)

② 등록후보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새로 구성된 교수회 이사회에서 서면투표 방식으로 상위 득표자 3인을 회장후보자로 선출한다.(개정 2017. 1.26.)

③ 등록후보자가 3인 이하인 경우와 이사회 선출을 통한 3인의 회장후보자를 선출한 경우 총회에서 교수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통해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 1.26.)

④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상위 직급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일직급인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발령일이 먼저인 자를, 발령일이 동일하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7. 1.26.)

⑤ 회장 선출은 교수회장 임기 시작 1주 전까지 실시한다.(개정 2019. 7. 4.)

⑥ 회장선거 일정 및 방법은 선거일 2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6.)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주 전까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개정 2019. 7. 31.)

⑧ 회장선거 일정 및 방법을 공고한 날 이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17. 1.26.)

제6조(임원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은 교수회 이사 중에서 1인을 이사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6. 5. 27.)

② 부회장은 2인을 두며, 교수회 이사 1명과 여교수회가 추천한 교수 1인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5. 27.) (개정 2017. 1. 26.)

③ 사무처장과 상임이사는 교수회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5. 27.)

제7조(임원의 임기 등)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궐위 시에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제8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27.)

③ 사무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사무처장이 된다.

제9조(총회) ① 교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예산 및 결산

2. 본회의 사업보고

3. 회장의 선출과 불신임 (개정 2016. 5. 27.) (개정 2017. 1. 26.)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의 불신임에 대한 사항 (신설 2016. 5. 27.)

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및 임용 과정에서 대학구성원과의 심각한 신뢰 상실을 초래한 경우

나. 대학 재정 및 회계 상의 심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경우

5.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교수회에 대한 사항 (개정 2017. 1. 26.)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때

3. 신임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신설 2017. 1. 26.)

제10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재적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중인 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과 감사 2명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⑤ 회장과 총장의 불신임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재적회원의 3분의 2 출석이 어려울 경우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7.)

제11조(감사의 선출 및 직무) ① 감사는 2명으로 하고 이사가 아닌 회원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 시 이사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

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는 교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처) ① 교수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② 사무처에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7. 2.)

제12조의2(산하기구) ① 산하기구로 대학(원) 교수회와 여교수회를 둘 수 있다.(제12조의2 신설 2017. 1. 26.)

② 대학(원) 교수회와 여교수회는 자체 규정과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원) 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대학(원) 학(원)장 선출방식

2. 대학(원) 교수회 이사 선출방식

3. 대학(원) 소속 교수의 권익 보호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사항

④ 대학(원) 교수회장은 소속 대학(원) 교수회 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구성 및 조직)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각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에서 선출하며, 각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이사 수는 선출일 기준으로 전임교원 50명당 1명으로 하되, 전임교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배정하지 않으며,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 대학에 5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학무회의 구성원과 학칙8조에 규정된 부속시설의 장은 이사가 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궐위 시 후임 이사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에서 임기 시작 5주 전까지 이사를 선출하여 교수회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31.)

⑧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회장은 7일 이내에 당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제15조(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회 회장,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교수회 회원 5분의 1 이상이 부의하거나 발의하는 교권, 교원복지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법 제24조3항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교수회 규정의 개정과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교수회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
- ② 이사회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및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 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배포한 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전체회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안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그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7조(재정) ① 교수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교수회의 재정은 회비, 대학 당국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8조(회계연도)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19조(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선출) 이사회에서 교수회장이 교수대표를 추천하고,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2019. 7. 31.)

제20조(규정 개정) 교수회의 규정은 교수회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개정 2019. 7. 4.)

부칙 <제1717호, 2019. 7.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전남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학칙」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학평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학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학평의위원회는 20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구성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회가 추천하는 교수 대표 9명
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가 추천하는 비정규 교수 대표 1명
3. 공무원노조 전남대지부가 추천하는 공무원 대표 3명
4. 대학노조 전남대지부가 추천하는 대학회계 직원 대표 1명
5. 조교협의회가 추천하는 조교 대표 2명
6. 총학생회(미 구성 시 대체기구)가 추천하는 학생 대표 3명
7.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문 대표 1명

②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각 구성단위에서 따로 정하며, 각 구성단위마다 전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다.

제4조(대학평의원회 의장 등) ①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학평의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5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 평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후임 평의원이 선출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 평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대학평의원회의 제반 행정업무에 대해 의장을 보좌한다.

제7조(평의원의 자격상실) ① 교원 평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3. 3개월 이상의 해외파견

② 직원, 조교 평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③ 학생 평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수료 또는 졸업

2.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방문학생 및 해외연수

④ 교외인사 평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⑤ 평의원이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징계를 요구받아 징계절차에 회부된 경우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8조(회의) ①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본회의는 심의 및 자문사항이 있을 때 개최하며, 1학기 및 2학기에 의안상정이 없는 경우 해당 학기에 1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본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학칙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간사 각 1명과 교원, 직원, 조교, 학생 구성단위의 비율을 고려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처리한다.

1.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의안상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 ① 의장은 의안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총장에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추가·보완을 요청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재심의 요청)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자문을 마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이 유서를 붙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제2항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다시 심의하여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공개) ① 대학평의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대학평의원회가 작성·보존하는 회의록은 회의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대학평의원회 간사가 작성한다.

제13조(행정·재정 지원 등)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원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평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규정 제1754호, 2020.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및 활동은 이 규정에 의
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의원 중 최초의 교원·직원 평의원의 임기는 2019년 8월 31
일까지로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의원 중 최초의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29일까지
로 한다.

IV. 전남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전남대학교 교수평의회(이하 “교수평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교수평의회는 학칙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진리·창조·봉사의 본 대학교 교육 이념 구현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교수평의회는 전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여교수회 부회장, 각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에서 선출된 전남대학교 교수회 이사,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평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평의회는 대학평의원회 비교원 평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평의회 의원은 처장 3명으로 한다.

④ 교수평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총장이 지명하는 교수평의회 의원 제외) 임기 중 궐위된 교수평의회 의원의 후임 교수평의회 의원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교수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학부(과) 및 부설기관(시설)의 설치와 폐지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
4. 총·학(원)장의 선출 방법
5. 대학의 시설 및 환경
6. 교권과 후생복지
7. 주요 보직자(부총장, 대학원장, 처장)에 대한 임명동의
8. 총장, 교수평의회 의장, 재직 교수평의회 의원의 1/3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교수평의회는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자료 제출 및 관계 교직원의 출석요구 등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교수평의회는 대학 구성원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3명 이상의 교수평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사안을 법령, 학칙 및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④ 교수평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간접연구경비회계, 발전기금회계, 생활/신용협동조합회계 등의 운영 계획과 시행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⑤ 재정복지위원회는 대학회계 프로그램 간 예산전용과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⑥ 교수평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직원 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교수평의회 활동에 관련된 자료의 제시 요구에 총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교수평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수평의회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임기 중 임원이 교체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의 장 1명
2. 부의장 1명
3. 감 사 2명
4. 기획이사, 홍보이사, 총무이사 각 1명

제6조(임원선출) ① 교수회 회장인 교수평의회 의원을 본회의에서 교수평의회 의장으로 선임한다.

② 부의장 및 감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교수평의회 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③ 전항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기획이사, 홍보이사, 총무이사는 교수평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직무) ① 의장은 교수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교수평의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업무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교수평의회의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매 학년초 정기회의 때 이를 보고한다.

④ 기획이사는 회무를 기획조정하고 의장을 보좌한다.

⑤ 홍보이사는 정책홍보, 회의록의 정리, 보관 및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⑥ 총무이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회계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교수평의회에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교수평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기획이사, 홍보이사, 총무이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교수회 부회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수평의회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의안 상정에 관한 사항
3. 총장이 의뢰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
4. 기타 교수평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사항) ①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교수평의회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를 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②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교수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무 및 학생 위원회

가.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나. 교직원 인사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2. 재정 및 복지위원회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대학구성원의 복지 및 권익에 관한 사항

다. 각종 회계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획 및 시설 환경 위원회

가. 총·학장의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부(과) 및 부속기관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및 환경, 안전에 관한 사항

라. 타 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학·연구 및 조정위원회

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

나.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관한 사항

다. 교내 구성원 이견 조정 및 현안 문제

제11조(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각 상임위원회에 교수평의회 의원이 아닌 자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회의에 참석, 발언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조정위원회) ① 교수평의회 업무 협의, 각 위원회의 협조체제 구축, 교수평

의회 활동의 홍보와 대학 구성원의 여론 조사활동을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업무조정위원회는 부의장, 기획이사, 홍보이사, 총무이사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14조(회의) ① 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 회 매학기 초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수평의회 의원 3명 이상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본회의의 의결은 재적 교수평의회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수평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의안발의) ① 3명 이상의 교수평의회 의원 또는 총장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의 발의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재심의 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총장은 교수평의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유서를 붙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1 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교수평의회 의장은 교수평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7조(교수평의회 의원 교체) ① 각 대학 교수회의는 재직교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의결로 해당 교수평의회 의원을 불신임 교체할 수 있다.

② 교수평의회 의원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혹은 교수평의회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3조의 선출 구성단위에게 당해 교수평의회 의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본교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9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교수평의회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교수평의회 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교수평의회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696호, 2019. 4.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전남대학교 평의회 구성 및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해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최초 교수평의회 의원의 임기는 2019년 8월 31일 까지로 한다.